

3. 租稅減免規制法 施行令中 改正令

大統領令 第15,197號 1996. 12. 31

주 요 골 자

- 가.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속 중소기업으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간 연장함(영 제2조 제2항 및 제5항).
- 나. 대기업이 사무자동화기구, 기술·인력개발설비,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등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(영 제7조의 2 제1항).
- 다.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과 기술·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통신업의 범위를 부가통신업에서 전기통신업으로 확대하고,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과 기술·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비목의 범위를 가급적 일치시켜 단순·명료화함(영 제8조 제1항, 제9조 제1항, 별표 3 및 별표 4).
- 라. 근로소득세 비과세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종업원의 범위에서 대주주인 임원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임·직원을 제외하고,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연간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등 주식매입선택권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함(영 제11조의 3).
- 마. 종전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후 3년 내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, 앞으로는 생산성향상시설로 대체하기 위하여 종전의 기계장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(영 제29조 제5항 제2호).
- 바. 현재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에도 주거지역·상업지역 및 공업지역

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, 앞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(영 제54조 제1항 제1호).

사. 중소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당해 업종의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매출액에 따라 제조업 및 광업의 경우에는 28퍼센트 내지 50퍼센트로, 도매업의 경우에는 28퍼센트 내지 32퍼센트로 정함(영 제96조의 2).

개정이유

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(1996. 12. 30, 법률 제5195호)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중소기업판정기준 및 기술·인력개발관련 지원세제를 개선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